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46
----------	-----

2019년 9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8월 7일 정진술 의원 대표발의
2. 회부일자 : 2019년 8월 13일
3. 상정일자 : 제289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9월 2일 상정·의결(수정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정진술 의원)

1. 제안이유

- 가. 2018년 12월 11일 헌혈증진 및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특별 시 등에 헌혈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도록 「혈액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시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서울특별시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음. (안 제8조)
- 나. 서울특별시헌혈추진협의회 기능을 규정함.(안 제9조)
- 다. 서울특별시헌혈추진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규정함.(안 제10조)
- 라. 서울특별시헌혈추진협의회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함.(안 제11조)
- 마. 서울특별시헌혈추진협의회 위원의 해촉을 규정함.(안 제12조)
- 바. 서울특별시헌혈추진협의회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1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혈액관리법」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Ⅲ.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개정안의 취지

- 개정안은 「혈액관리법」(이하 “법”)의 최근 개정된 사항을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제안된 안임.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가. 목적조항의 수정과 관련

- 개정안은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의 목적조항을 수정하였음. 현행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제 2조2항1)에 근거한 위임조례인바, 각주와 같이 해당 조항은 헌혈권장에 관하여 중앙정부의 정책에의 협조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 개정안에서 목적조항의 수정을 위하여 법 제4조의4²⁾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헌혈추진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1) 제2조(헌혈의 권장)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의 수급조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제1항에 따른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혈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권장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생략>

2) 제4조의4(헌혈추진협의회 구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있는데, 협의회는 법에 따라 시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 하는 협의회로 규정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혈액관리법 시행령</u>」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혈액관리법</u>」 제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 ----- ----- -----.</p>

- 현행 조례의 발의목적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 헌혈 증진 및 헌혈장려인 점에서 볼 때,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목적조항에서 강조되는 경우 협의회 구성을 위한 조례로 보일 수 있어 협의회 구성 외 헌혈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펼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할 수 있음.
- 또한 조문의 인용에서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를 구성한다고 하였으나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은 중앙정부와의 협조를 규정하는 조문으로 인용에서 간명성이 떨어진다고 할 것임.
-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은 협의회가 아닌 보건복지부의 혈액수급 계획 및 권장에 대한 협조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권장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제2조제2항이 협의회 구성을 의미한다고 볼 여지가 존재하나 명확하게 협의회 구성 근거로 규정하기 어려움.

나. 협의회 구성과 관련

- 개정안의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신설조항으로 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구성(제8조), 기능(제9조), 위원의 임기(제10조), 위원장의 직무(제11조), 위원의 해촉(제12조), 협의회 운영(제13조)로 제안되었음.
- 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집행부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우리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2017년 6월 서울특별시 헌혈추진협의회 위원장을 시민건강국장으로 하여 운영 중에 있고, 본 위원회의 경우 소관 업무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국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함.

개정안	집행부의견
협회의 위원장은 <u>행정1부시장</u> 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협회의 위원장은 <u>헌혈관련 업무 부서의 국장</u> 으로,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 관련 업무 부서의 <u>과장</u> 으로 한다.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 관련 업무 부서의 <u>팀장</u> 으로 한다.

- 현재 집행부서의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은 2017년 구성되어 세계 헌혈자의 날 기념 유공자 포상을 주요한 업무로 하고 있는데 이는 협의회의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 현재 구성된 협의회의 주요한 업무가 홍보에 치중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홍보 역할이 수행되었다기 보다는 대한적십자사의 추천에 의한 서울시장의 표창이 2017년과 2018년 2회에 걸쳐 이루어 졌으며, 공적심의회는 시민건강국장과 시민건강국 소관의 각 과장에 의해 이루어졌음. 또한 2019년 6월 14일이 헌혈의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례적인 표창조차 수여되지 않은 상황임.

구분	소속	직위
위원장	서울시청	시민건강국장
위원	서울시청	보건의료정책과장
위원	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건강과장
위원	서울지방경찰청	경무과장
위원	수도방위사령부	인사근무과장
위원	뉴시스	사회정책부장
위원	삼성서울병원	진단검사의학과장
위원	대학적십자사 서부혈액원	혈액원장
위원	한아음혈액원	혈액원장
위원	중앙대학교병원 혈액원	혈액원장

- 이에 혈액수급의 안정화와 시민의 적극적인 헌혈참여 확대를 위한 효율적인 홍보 및 설득방안의 마련을 위해 협의회 구성과 역할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할 것이며, 실효성 있는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관련 예산의 편성 등에 있어 미온적인 상황임.

다. 협의회 위원의 구성 관련

- 개정안 제8조는 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중 상기에 서술된 집행부의 의견을 제외하고 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구성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음.

개정안 제8조

<생략>

④ 협의회 당연직 위원은 헌혈 관련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2.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보건·의료기관, 민간단체, 적십자 혈액원 등의 기관이나 단체의 장 또는 관계자
3.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시민

⑤ 위원장은 협의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내에 실무지원반을 둘 수 있다.

- 법 제4조의4³⁾는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조례에 위임된 사항으로 보여지는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3 종합의견

-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서 특별히 지정되지 않고 조례에 위임된 내용을 추가하는 바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서는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일부 조문의 명확성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3) 제4조의4(헌혈추진협의회 구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수정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846
----------	------------

제안연월일 : 2019년 9월 3일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고, 현행 사업의 진행사항을 조례에 반영함.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헌혈추진협의회 운영사항의 반영(제8조제3항, 제13조제3항)
- 지방의회의장의 추천이 아닌 지방의회의 추천으로 수정(제8조제4항제1호)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제3항 중 “행정1부시장”을 “시민건강국장”으로 한다.

안 제8조제4항제1호를 중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을 “서울특별시의회”로 한다.

안 제13조제3항 중 업무부서의 “과장”을 업무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혈액관리법 시행령</u>」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혈액관리법」 제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u> ----- ----- ----- ----- ----- -----.</p>	<p>제1조 <개정안과 같음></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u><신설></u></p>	<p>제2조(정의) ----- ----- -----.</p> <p>1.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할 수</p>	<p>제2조 ----- ----- -----.</p> <p>1. <개정안과 같음></p>

<p>1. ~ 3. (생략)</p> <p><신설></p>	<p><u>있도록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u></p> <p>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p> <p><u>제8조(헌혈추진협의회 구성) ① 「혈액관리법」 제4조의4에 따라 시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 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서울특별시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u></p> <p><u>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2. ~ 4.<개정안과 같음></p> <p><u>제8조(헌혈추진협의회 구성) ① ② <개정안과 같음></u></p>
---------------------------------------	---	---

	<p>③ <u>협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u>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④ <u>협회의 당연직</u> 위원은 <u>헌혈 관련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u>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u>다음 각 호의 사람</u>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1. <u>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u></p> <p>2. <u>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보건·의료기관, 민간단체, 적십자 혈액원 등의 기관이나 단체의 장 또는 관계자</u></p> <p>3. <u>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u></p>	<p>③ <u>협회의 위원장은 시민건강국장이</u>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④ <u>협회의 당연직 위</u>원은 <u>헌혈 관련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u>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u>다음 각 호의 사람</u>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1. <u>서울특별시의회 의 추천을 받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u></p> <p>2 ~ 3 <개정안과 같음></p>
--	---	--

<p><u><신 설></u></p>	<p><u>심이 많은 시민</u></p> <p><u>⑤ 위원장은 협의회</u> <u>의 효율적 운영을 위</u> <u>하여 협의회 내에 실</u> <u>무지원반을 둘 수 있</u> <u>다.</u></p> <p><u>제9조(협의회 기능) 협</u> <u>의회는 다음 각 호의</u> <u>사항을 협의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지역사회 중심의</u> <u>안정적인 헌혈자원</u> <u>확보</u> <u>2. 체계적이고 효율적</u> <u>인 헌혈권장 및 장</u> <u>려</u> <u>3. 혈액수급 부족 등</u> <u>위기관리대책 마련</u> <u>4. 헌혈자원봉사활동</u> <u>지원</u> <u>5. 제4조에 따른 사업</u> <u>계획의 추진</u> <u>6. 헌혈 관련 정보의</u> <u>제공 및 홍보</u> <p><u>제10조(위원의 임기) 위</u> <u>원의 임기는 2년으로</u></p>	<p><u>⑤ <개정안과 같음></u></p> <p><u>제9조 <개정안과 같</u> <u>음></u></p> <p><u>1 ~ 6 <개정안과 같음></u></p> <p><u>제10조 <개정안과 같</u> <u>음></u></p>
<p><u><신 설></u></p>	<p><u>제10조(위원의 임기) 위</u> <u>원의 임기는 2년으로</u></p>	<p><u>제10조 <개정안과 같</u> <u>음></u></p>

<p><u><신 설></u></p>	<p><u>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p><u>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u></p> <p><u>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u>제11조 ①, ② <개정안과 같음></u></p>
<p><u><신 설></u></p>	<p><u>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u></p>	<p><u>제12조 <개정안과 같음></u></p>

<p><u><신 설></u></p>	<p>1. <u>임기 중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u></p> <p>2. <u>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u></p> <p>3. <u>질병이 있거나 6개월 이상 해외장기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u></p> <p>4. <u>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u></p> <p>5. <u>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u></p> <p><u>제13조(협의회 운영 등)</u></p> <p><u>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u></p>	<p>1. ~ 5. <u><개정안과 같음></u></p> <p><u>제13조 ① ② <개정안과 같음></u></p>
---------------------------	--	--

<p><u>제8조 ~ 제11조</u> (생략)</p>	<p><u>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u>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 관련 업무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u></p> <p><u>④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u></p> <p><u>제14조 ~ 제17조</u> (현행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와 같음)</p>	<p><u>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 관련 업무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u></p> <p><u>④ <개정안과 같음></u></p> <p><u>제14조 ~ 제17조</u> <개정안과 같음></p>
-------------------------------	--	--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혈액관리법」 제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할 수 있도록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헌혈추진협의회 구성) ① 「혈액관리법」 제4조의4에 따라 시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서울특별시헌혈추

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민건강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헌혈 관련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서울특별시의회의의원
2.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보건·의료기관, 민간단체, 적십자 혈액원 등의 기관이나 단체의 장 또는 관계자
3.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시민

⑤ 위원장은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내에 실무지원반을 둘 수 있다.

제9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2.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권장 및 장려
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대책 마련
4. 헌혈자원봉사활동 지원
5.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추진
6. 헌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홍보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질병이 있거나 6개월 이상 해외장기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협의회 운영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 관련 업무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혈액관리법 시행령</u>」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u><신설></u></p> <p>1. ~ 3. (생략)</p> <p><u><신설></u></p>	<p>제1조(목적) ----- 「<u>혈액관리법</u>」 제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 ----- -----.</p> <p>제2조(정의) ----- -----.</p> <p>1.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할 수 있도록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p> <p>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p> <p>제8조(헌혈추진협의회 구성) ① 「<u>혈액관리법</u>」 제4조의4에 따라 시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p>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민건강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헌혈 관련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2.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보건·의료기관, 민간단체, 적십자 혈액원 등의 기관이나 단체의 장 또는 관계자

3.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시민

<신 설>

⑤ 위원장은 협회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협회 내에 실무지원반을 둘 수 있다.

제9조(협회의 기능)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2.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권장 및 장려
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대책 마련
4. 헌혈자원봉사활동 지원
5.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추진
6. 헌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홍보

<신 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

<신 설>

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질병이 있거나 6개월 이상 해외 장기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 설>

제13조(협의회 운영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p><u>제8조 ~ 제11조</u> (생략)</p>	<p><u>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u>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현행 관련 업무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u></p> <p><u>④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u></p> <p><u>제14조 ~ 제17조</u> (현행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와 같음)</p>
-------------------------------	---